

# 변경 대조표

1. 변경대상 서류: **집합투자규약**

2. 변경사유: 펀드 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개편(컷-오프제)에 따른 변경사항 및  
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15 조 9 호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사항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5 장 수익 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 24 조(환 매가격)	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 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b>제3영업 일</b> 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.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<u>17 시(오후 5 시)경과</u> 후 환매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<b>제 4 영업일</b> 의 기준가 격을 적용한다.	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 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b>제4영업 일</b> 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.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<u>17 시(오후 5 시)경과</u> 후 환매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<b>제 5 영업일</b> 의 기준가 격을 적용한다.
제 8 장 신탁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 38 조(집 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의 변경)	(신설)	④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 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33조와는 별도 로 제5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지 급해야 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 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. 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의 법령·신탁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그 업무 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 생시킨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다 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 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서 인출한다 1. 대상금액: 제33조에 따른 해당 투자 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 신탁 순자산총액에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 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 (법률자문료 등)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1년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⑥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는 제5항 적 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 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부칙	(신설)	제 1 조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<b>2020</b>

	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-	------------------